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주·정차 금지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등 추가〉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2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협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모든 차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 우선도로 외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호·제5호).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br>-----<br>-----<br>-----<br>-----<br>-----<br>-----<br>-----<br>-----<br>----- |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1. -----<br>-----<br>-----<br>-----<br>-----제외한다),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u>자전거횡단도</u>                 |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2. ~ 4. (현행과 같음)                                                                                        |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

| 현행                                                                                                                                                                                                                                                                                                                                                                                                                                                                                                               | 개정안                                                              |
|------------------------------------------------------------------------------------------------------------------------------------------------------------------------------------------------------------------------------------------------------------------------------------------------------------------------------------------------------------------------------------------------------------------------------------------------------------------------------------------------------------------|------------------------------------------------------------------|
| <p>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u>횡단 보도</u>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p> <p>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p>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p> <p>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p> <p>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p>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p> | <p>5. -----<u>횡단 보도·자전거횡단도로</u>부터---</p> <p>6. ~ 8. (현행과 같음)</p> |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2<sup>1)</sup>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sup>2)</sup>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sup>3)</sup>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sup>4)</sup>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음.

-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도로 사진 및 지시표지판 >

|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br>겸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br>우선도로                                                                                      |
|------------------|-----------------------------------------------------------------------------------|---------------------------------------------------------------------------------------------|------------------------------------------------------------------------------------|--------------------------------------------------------------------------------------------------|
| 도로<br>사진         |  |            |  |               |
| 지시<br>표지판<br>등   |  | <br>분리 비분리 |  | <br>(표지판은 없음) |
| 개정안의<br>적용<br>여부 | 개정안에 따른 주정차금지 구역에 포함                                                              |                                                                                             |                                                                                    | 개정안에 미포함                                                                                         |

자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535) 검토보고의 참고 자료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도나 보도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상 자전거도로에 대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sup>5)</sup>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차마<sup>6)</sup>의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

5)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외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그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면에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7)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해당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등이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하기 위하여 진입·통행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7)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 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            |
|-------------|------------|------------|
|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1. 버스 전용차로  | (생략)       | (생략)       |
| 2. 다인승 전용차로 | (생략)       |            |
| 3.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등       |            |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음<sup>8)</sup>.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시행 두 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sup>9)</sup>

결국 현행법은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에만 자동차 등의 통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함. 다만, 현행법은 자전거 도로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를 제32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유형에 관계 없이 정차·주차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동차 등의 통행금지 대상에 자전거 우선도리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제13조제6항) 및 자전거

---

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사람중심교통소식 2020. 5. 22. 게시글,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 정차 등 시민신고…시행 2개월만에 1700여건 접수”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168>)

우선도로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도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포함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의2<sup>10)</sup>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자전거 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횡단보도 자체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제32조제1호 및 제5호), 자전거횡단도 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전거횡단도 또는 그 인근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 횡단하려는 자전거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상호간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고, 자전거횡단도가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0)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횡단하는 자전거와 진행 차량 간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자전거 횡단도의 예시 >



출처: 뉴스시스 2017년 3월 29일 기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주시 주요도로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다만,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 금지 대상을 “모든 차<sup>11)</sup>의 운전자”로

1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등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금지되게 됨.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다른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자전거 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sup>12)</sup> 등을 고려할 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자전거도로 등의 주·정차 금지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장소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한 사고가 심각할 가능성이 큰 곳들<sup>13)</sup>로, 자전거도로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2)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3)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횡단도는 도로 횡단 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대부분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되는바 자전거횡단도 부근은 이미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포함된다는 의견임.

또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sup>14)</sup>에 따라, 현제도 시·도경찰청장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있는 자전거도로·횡단도 인근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부근의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발생의 위험은 펜스·연석 등 시설보완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345 |

---

14)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